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종기·수확기 등에 계절적으로 단기간 필요한 농·어촌 일손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현행 계절근로(E-8) 자격의 체류기간 상한(5개월)을 유지하되, 3개월의 범위 내에서 한 차례 체류기간 연장을 허용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제외한다”를 “한 차례만 3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로 한다.

별표 5의2 계절근로(E-8)의 근무처의 변경·추가 허가 또는 신고란 다음에 계절근로(E-8)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체류기간 연장허가	○ 고용계약서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급한 체류기간 만료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연장 추천서
--------------	--

별표 6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계절근로(E-8)	○	○			○
-----------	---	---	--	--	---

별지 제42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절근로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별표 5의2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 현재 국내에 체류 중인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체류기간 만료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연장 추천서
(Letter of Recommendation to Extend Stay for Seasonal Worker whose Stay has Expired)

국적 (Nationality)	성명 (Name in Full)
여권번호 (Passport No.)	외국인등록번호 (Foreigner Registration No.)
근로계약기간 (Labor Contract Period)	출국 예정일(Expected Date of Departure)

근무처 현황
(Workplace Information)

사업장명 (Name of Workplace)	소재지 (Address)
대표자 (President)	전화번호 (Telephone No.)
사업자등록번호 (Business Registration No.)	업종 (Industry Type)

체류기간 만료 계절근로자가 「출입국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추천합니다.

This letter is to recommend the above seasonal worker whose stay has expired to obtain permission to extend period of stay in accordance with Article 25 of the Immigration Act.

년(Year) 월 (Month) 일(Day)

○○시장 (군수, 구청장)
Mayor of ○○ City (Gun, Gu)

직인
Official
Seal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